#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96 발의연월일: 2022. 9. 16.

발 의 자:이주환·하영제·박대수

정찬민 • 이헌승 • 이명수

전봉민 · 정우택 · 지성호

조명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연간 73억개 이상의 마스크가 배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한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기에 재활용조차 할 수 없어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누적되고 있음.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20) 연도별 폐기물 증가는 코로나19이후 2019년에 11.5%, 2020년에 7.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비하여 매립지는 2030년 기준 총 56% 가 사용만료 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립지 및 소각지 등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민간업체 중심 수거에 의존하는 현행 수거 방식은 시장 침체에 따른 수거중단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지역 내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간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여 처리비용의 증가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은 지역간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등 발생지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 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신설 및 안 제13조의2 등).

법률 제 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를 "폐기물처리시설을 관할구역 내에 설치·운영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곤란 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반입수수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의2제2 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처리시설이 제4 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외 의 처리시설인 경우의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 2.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 3.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발굴이나 개선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처리하여야 한다"를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를 "폐식

용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무) ①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 폐기물처리시설을 관 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할구역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 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 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 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신 설>

<u>관할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필</u>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 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체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처 리할 수 있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지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6조의 반입수수료의 2배의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 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 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 처리시설이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처 리시설인 경우의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 2. 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
- 3. 폐기물의 처리 방법의 발굴 이나 개선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환경부렁으로 정하 는 사업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② (생 략)

#### <신 설>

#### ③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 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 (생략)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 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
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폐식용유